

직제 규정

제정 1996. 11. 01.
제81차 개정 2024.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교의 기본 행정 조직을 정하고 체계 있는 교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04.20)

제2장 총장, 부총장, 총장 직속 기구

[장 명칭 변경 2020.01.22]

제3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4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1.22.)

1. 교무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2. 예산, 감사,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개정 2020.05.13., 2022.02.18)
3. 교직원 인사, 취업, 학생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4. 대외협력, 국제교류, 재정확충 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5. 부속기관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2022.06.27)

② 총장의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8)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2020.03.18]

제5조(비서실) 총장에 관한 비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5조의2(감사팀) [본조신설 2020.01.22.] (삭제 2020.05.13.)

제5조의3(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육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24.]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6조(보직 및 임기) ① 행정부서,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부총장의 임면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

② 행정부서의 원장, 실장, 센터장, 단장, 부장, 대학의 학과장, 학부장,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 중 한방병원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26., 2022.04.20)

④ 사무직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4장 대학, 학부(과) 및 대학원

[장 명칭 변경 2020.01.22]

제7조(단과대학)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지원팀을 두되,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 교학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③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④ 한의과대학에는 한의학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을 둔다. 단, 한의학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23.)

[전부개정 2019.02.27.]

제7조의2(FIND칼리지) ① 교양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FIND칼리지를 둔다.

② FIND칼리지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FIND칼리지에 교양교육센터, FIND-MYWAY센터, 교양영어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22.04.20]

제8조(학부 및 학과)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에는 학칙에 규정된 학부 및 학과를 둔다.

② 각 학부 및 학과에는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학원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둔다.

④ FIND칼리지에는 비모집단위로서 FIND칼리지학부를 둔다. (신설 2022.08.23)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조명 변경 2020.01.22]

제9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유관 대학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지원팀을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5장 행정조직

제10조(대학본부) ① 총장이 통할하는 대학본부에 교무연구처, 기획처, 학생취업지원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행정지원처, 미래교육혁신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 실, 센터, 단, 부,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1., 2022.04.20)

② 제1항의 행정부서 각 처·원에는 처·원장을 두고, 각 처·원에 관한 임명사항은 제11조에서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11.21., 2022.04.20)

③ 제1항의 원장, 실장, 센터장, 단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

고,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11조(교무연구처) ① 교무연구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교무연구처는 학교의 교무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연구처에 교무연구팀, 학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0.07.30., 2022.04.20)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제12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기획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예산편성, 평가, 통계 및 성과관리,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5.13., 2022.04.20)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기획예산팀, 평가팀, 감사팀, IR센터를 둔다. (개정 2020.05.13., 2022.04.20., 2024.01.18.)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제13조(학생취업지원처) 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생지도, 학생서비스, 취업진로, 창업, 현장실습, 사회봉사, 장애학생 지원, 체육부, 숙박 및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7.30., 2022.04.20., 2023.2.24)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 학생지원팀, 취업진로지원팀, 창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사회봉사단, 장애학생지원센터, 체육부, 생활관을 둔다. (개정 2020.07.30., 2021.11.22., 2022.04.20., 2023.2.24)

④ 삭제 (2022.04.20)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제14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대외협력처는 대외협력, 대내외 홍보, 브랜드 전략,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2023.02.24)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홍보팀, 국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9.06.05., 2022.04.20, 2023.02.24)

④ 삭제 (2022.04.20)

[조 신설 2019.02.27]

제15조(입학처) ①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입학처는 입학, 입시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2023.2.24)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팀, 입학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4.20, 2023.2.24)

[전부개정 2019.02.27]

제16조(행정지원처) ① 행정지원처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행정지원처는 학교의 행정지원, 회계, 구매관재, 학교시설 및 영선, 실험실습기자재의 종합 관리 및 연구실 안전관리, 예비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2023.2.24)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에 행정지원팀, 회계팀, 시설팀,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22.04.20)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제16조의2(미래교육혁신원) ① 미래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4.20)

② 미래교육혁신원은 교수와 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및 성과관리,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원격교육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22.04.20)

④ 제6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전임교원을 미래교육혁신원 소속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09.01)

[본조 신설 2021.11.22.]

제6장 부속기관·부설연구소·위원회

[장명개정 2022.04.20]

제17조(부속기관)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24.01.18.)

1. 한방병원 : 한방병원의 편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학술정보원
 - 가. 도서 및 연구자료의 수집·관리, 학술정보의 열람 및 대출, 전산기기를 이용한 학내 구성원의 교육 및 실습, 학사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업무, 교내 정보화 업무를관장한다.
 - 나.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술지원팀과 전산정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3.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
4. 실습목장 : 동물자원 계열 학과의 실습교육 및 연구
5. 실습농장 : 식물·동물에 대한 실습 및 연구실험
6. 미디어센터 : 본교 언론기관으로 정규뉴스, 라디오, 웹진 편집, 제작 등
7. 삭제 (2023.2.24)
8. 보건소 :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진료
9. 심리상담·인권센터 (개정 2023.2.24)
 - 가. 학생상담지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업무, 구성원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업무를 관장한다.
 - 나.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팀과 인권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10. 제5조의3으로 이동 (2023.2.24)
11. 공학교육센터 :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
12. 평생교육원
 - 가.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에게 평생교육,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양과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나.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팀과 HRD직업능력개발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13. 요양보호사교육원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
14.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 15. 청년지원센터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1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및 일상생활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신설 2022.08.23.)
- 17. 탄소중립지원센터 : 탄소중립, 녹색성장,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신설 2023.09.18.)
[전문개정 2022.04.20]

제18조(부설연구소) ① 본교에 학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교내·외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설연구소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02.27]
[전문개정 2022.04.20]

제7장 삭제(2022.04.20)

제19조(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02.27.]
[전문개정 2022.04.20]

제20조 삭제(2022.04.20)

제21조 삭제(2022.04.20)

제21조의2 삭제(2022.04.20)

제21조의3 삭제(2022.04.20)

제21조의4 삭제(2022.04.20)

제22조 삭제(2022.04.20)

제23조 삭제(2022.04.20)

제24조 삭제(2022.04.20)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평가관리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실은 제13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99학년도 대학평가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01년 6월 5일 학칙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88, 2004.4.14)

이 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97, 2005.4.19)

이 규정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07, 2005.6.28)

이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84, 2005.10.18)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65, 2005.12.12)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412, 2005.12.26)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79, 2007.11.27)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14, 2008.7.16)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97, 2008.8.1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43, 2008.9.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88, 2008.11.19)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72, 2009.2.18)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55, 2009.4.9)

이 규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64, 2009.6.22)

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8, 2009.2.10)

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56, 2010.4.23)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1, 2010.6.8)

이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90, 2010.7.27)

이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14, 2011.6.2)

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72, 2011.11.7)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8, 2012.1.16)

이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2, 2012.3.14)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44, 2014.4.3)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95, 2014.10.2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73, 2014.11.10)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5, 2015.01.15)

이 규정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0, 2015.01.29)

이 규정은 2015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0, 2015.02.24)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6, 2015.06.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총장에 관한 경과조치) 신 직제규정에 따른 부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부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86, 2015.06.19)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0, 2016.01.11)

이 규정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9, 2016.02.15)

이 규정은 2016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25, 2016.08.10)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86, 2016.09.05)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7, 2017.04.20)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 시행된 행정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부-373, 2017.09.20)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7.12.0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1, 2017.12.2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26, 2018.04.26)

이 규정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63, 2018.07.12)

이 규정은 2018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54, 2018.08.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농업과학교육원규정 및 숲해설가 양성교육원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9, 2019.0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96, 2019.06.0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84, 2019.07.26)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17, 2019.10.1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51, 2019.11.06)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4, 2020.01.22)

이 규정은 2020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79, 2020.03.18)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5, 2020.05.13)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27, 2020.06.26)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83, 2020.07.30)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61, 2021. 6. 23.)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13, 2021. 11. 2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9, 2022. 0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년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학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③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④ 교육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⑥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⑦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⑧ 사회협력 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 0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 시행세칙,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직원인사규정 운영내규, 예산·회계규정 등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교육연구처”를 “교무연구처”로 하고, “교육연구처장”을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2. “기획평가처”를 “기획처”로 하고, “기획평가처장”을 “기획처장”으로, “평가성과관리팀”을 “평가팀”으로 한다.
3. “학생행복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하고, “학생행복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학생행복팀”을 “학생지원팀”으로, “창업지원단”을 “창업지원팀”으로, “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을 “사회봉사단”으로, “학생행복상담센터”를 “학생심리상담센터”로 한다.
4. “국제어학원 국제교류팀”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
5. “입학홍보처”를 “입학처”로 하고, “입학홍보처장”을 “입학처장”으로 한다.
6. “인재개발원”을 “미래교육혁신원”으로 하고, “인재개발원장”을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7. “총무팀”을 “행정지원팀”으로 한다.
8. “상지미디어센터”를 “미디어센터”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65, 2022. 0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공포·시행과 동시에 HRD직업능력혁신원 규정, 교육연수원 규정,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규정, 인재개발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120, 2022. 08. 23.)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188, 2022. 09. 0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06, 2023. 2. 24.)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959, 2023. 0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03, 2024. 01. 18.)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